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826호 2022. 1. 7.(금)

www.jeonbuk.go.kr

훈 령

- 전라북도 훈령 제1788호 전라북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안 1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1-411호 대초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4
- 전라북도 고시 제2021-412호 발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현황 15
- 전라북도 고시 제2022-3호 정읍 태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16
- 전라북도 고시 제2022-4호 정읍 철도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25
- 전라북도 고시 제2022-5호 정읍 소성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37
- 전라북도 고시 제2022-7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46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2055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47
- 전라북도 공고 제2022-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48
- 전라북도 공고 제2022-22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49

시군행정

- 정읍시 공고 제2022-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50
- 남원시 공고 제2022-18호 도시계획시설(소로1-46호선)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56
- 김제시 고시 제2021-15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63
- 완주군 공고 제2022-1호 군계획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업 공사완료 공고 64
- 완주군 공고 제2022-2호 군계획시설(국립식량과학원) 사업 공사완료 공고 65
- 임실군 고시 제2022-3호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6

기 타

- 전라북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공고 제2022-1호 공인 등록 공고 67

회람									
-----------	--	--	--	--	--	--	--	--	--

전라북도 방첩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지사

2022. 1. 7.

전라북도 훈령 제1788호

전라북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전라북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북도청에 소속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전라북도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근로자
2. 「전라북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 「전라북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의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인력 및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재해예방의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산업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2.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도지사 또는 관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른다.

제6조(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2. 안전보건활동 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3. 안전보건관리체계·인원 및 역할
4. 산업재해 예방활동 내역 및 실행결과의 보고
5.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개선계획 및 소요예산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도지사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소관부서의 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① 도지사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용부서의 장 또는 현장 관리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산업보건과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6.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관리자) ① 도지사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 안전인증대상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보건관리자) ① 도지사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7.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2.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산업보건)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산업보건의는 영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에 대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관할 노동관서에 추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 대표 1명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3.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3명

④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리책임자
2. 주관부서 과장
3. 근로자 50명 이상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4. 안전관리자
5. 보건관리자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지정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전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14조(위원회 임기) ① 근로자 대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안전감독관,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자체 정례조회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항
- 2.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위원회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보존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9조(교육계획의 수립)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보건의 생활화를 위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제20조(안전보건교육의 종류) ① 안전·보건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법적으로 선임 또는 지정되는 인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근로자 교육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1. 정기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2. 채용 시 교육: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는 교육
-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4. 특별교육: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③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

람들이 이수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날 기준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날 기준 전후 3개월 사이

3.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날 기준 전후 3개월 사이

제21조(교육실시 방법) ① 사업장 자체 교육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규칙 제26조제3항에 명시된 사람만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영, 규칙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을 따른다.

제22조(교육의 기록·보존) ① 관리감독자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담당자,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이 기록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23조(안전보건 점검) 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의 의무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제1항의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며, 해당 사업장은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24조(안전인증 기계·기구의 사용)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명시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검사기관에서 안전인증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제25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영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규칙 제126조에 따른다.

②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0호 안전검사 신청서를 작성 후 검사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한다.

③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은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기구에 부착한다.

제26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영 별표 20에 따른 기계·기구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관리하며, 방호조치가 해체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해서는 안되며, 방호장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알린다.

제27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이유로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안전·보건 표지)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를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및 설치·부착장소는 규칙 별표 7과 같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순찰)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근로상태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을 실시한다.

② 순찰결과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안전기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6장 보건관리

제31조(작업환경측정)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칙 제1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규칙 제187조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제32조(근로자의 건강진단)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규칙 제196조에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실시시키는 규칙 제197조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이 아닌 다른 건강진단 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안된다.

제33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한다.

②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며 보호구별 지정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한다.

제34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①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려는 경우 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규칙 제17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경고표시를 한다. 다만, 대상 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경고표시를 하지 않는다.

③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제35조(근골격계 질환예방) ① 관리감독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자세가 필요한 작업 또는 무리한 힘의 사용이 필요한 작업 등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657조에 따라 유해요인 조사를 수행한다.

② 조사방법은 안전보건규칙 제658조에 따라야 하며,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제3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도지사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규칙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산업보건의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업무에 복귀시킨다.

제37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38조(위험성평가의 종류 및 실시 시기) ① 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획의 실행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39조(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3. 위험성평가는 대상 작업과 관련된 관리감독자, 근로자,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참여하여 실시한다.

4. 위험성평가 기법은 작업장 상황과 작업특성에 적합한 기법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제40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41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1.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3.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4. 작업절차서 정비, 안전표지 부착 등의 관리적 대책
 5.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②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한다.
- ③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마련한다.
- ④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8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2조(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①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경우 관리감독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병원으로 후송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재해로 인한 작업현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재해현황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3조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④ 재해 발생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43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안전관리자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해당 작업장의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한다.

제44조(산업재해 기록 등)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 30호서식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기록·보존한다.

제9장 보칙

제45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제46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411호

대초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부안군 하서면, 보안면, 주산면, 백산면 일원에 시행 예정인 부안 대초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전라북도지사
2022년 1월 7일

1. 사업명 : 대초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부안군 하서면, 보안면, 주산면, 백산면, 동진면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사전예방, 수리시설물 현대화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 및 영농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415ha
5. 사업개요
 - 용배수로 : 용배수로 설치 및 보수보강(연장 6,534m)
 - 부대공사 : 가설사무소, 시험비, 중기운반 등
6. 사업기간 : 2021. 1. ~ 2024. 12.
7. 총사업비 : 4,000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화063-580-1040)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1-412호

발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현황

단지지정기준 (15.10.13. 농식품부 고시)				도내 주산지 지정현황			
품 목	지역	면 적	출하량 (생산량)	지 역	면 적(ha)	출하량(생산량)(톤)	
맥류	밀	시·군·구	200ha 이상	656톤 이상	익산시	266	1,131
					정읍시	417	1,876
					김제시	520	1,447
					부안군	500	2,200
	쌀보리	시·군·구	500ha 이상	1,245톤 이상	군산시	1,865	9,977
					익산시	502	2,434
					김제시	2,920	11,774
					고창군	814	4,395
	겉보리	시·군·구	200ha 이상	494톤 이상	부안군	1,800	8,280
					군산시	657	3,785
					익산시	528	1,716
					김제시	2,195	9,383
두류	콩	시·군·구	1,000ha 이상	1,680톤 이상	부안군	1,900	8,683
					김제시	2,750	8,250
서류	고구마	시·군·구	500ha 이상	7,550톤 이상	부안군	1,002	3,006
					익산시	850	12,750
					김제시	561	7,629
	감자	시·군·구	500ha 이상	12,605톤 이상	고창군	1,260	26,460
잡곡류	메밀	시·군·구	50ha 이상	45톤 이상	김제시	594	11,769
					고창군	54	68
	귀리	시·군·구	100ha 이상	300톤 이상	군산시	125	762
					정읍시	230	700

※ 신규 : (군산시) 귀리 / (고창군) 메밀

전라북도 고시 제2022-3호

정읍 태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 태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월 7일

1. 농공단지 개요

가.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19번지 일원

나. 관리기관 :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440-1)

다. 조성목적 : 산업입지 기반조성으로 공장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 원자재 사용으로 농촌지역 소득증대 기여 지역균형발

라. 추진경위

- 2007. 10. 18 : 기본계획수립 계약 (정읍시-한국농어촌공사)
- 2008. 10. 23 : 농공단지 지정고시 (정읍시 고시 제2008-62호)
- 2010. 06. 08 : 태인농공단지 지정 변경승인
- 2010. 06. 08 : 태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도 고시 제2011-118호)
- 2022. 1. 7 : 태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도 고시 제2022-3호)

마. 분양현황(변경)

(단위 : m²)

변경 여부	구 분	총면적	분 양 계 획면적	분양면적	미분양 면 적	조성기간
기 정	계	243,752	171,616		171,616	
변 경	계	243,752	-	171,616	-	
기 정	산업시설구역	171,616	171,616		171,616	2008. 08. 05. ~ 2011. 12월
변 경	산업시설구역	171,616		171,616	-	2008. 08. 05. ~ 2011. 12월
	지원시설구역	0				
	공공시설구역	32,781				
	녹지시설구역	39,355				

바. 입주현황(변경)

(단위 : 개소, m²)

변경 여부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지원기관	계	제조업	지원기관
기 정	계	22	22	-	171,616	171,616	
변 경	계	33	33		171,616	171,616	
기 정	2011. 04.			-			
변 경	2021. 09. 현재	33	33		171,616	171,616	
기 정	향후계획	22	22	-	171,616	171,616	
변 경	향후계획	33	33		171,616	171,616	

사. 입지여건

시설명	현 행	확충 계획
항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항 이용 - 접안능력 : 20선석 ('04,4선석) - 하역능력 : 3백만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신항 건설 - 접안능력 : 2~10만톤 54선석 - 하역능력 : 47백만톤/년 - 사업기간 : 2011-2021
교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서쪽으로 지구와 경계하여 국도 30호가 지남(익산,군산,부안) ◦ 호남고속도로 태인IC에서 0.5km ◦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에서 15km ◦ 국도1호선 인접지 ◦ 호남선 철도 신태인역 	
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수원:광역상수도 ◦ 1일 소요량 : 331m³ /일 	
전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역 :22.9kv, 9,429kw 	
통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선수: 124 회선 	
폐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처리 	
공동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로 : 25,243m² ◦ 주차장 : 1,368m² 	

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 방향

- (1) 적극적인 입주기업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로 생산활동 지원
-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및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 (3)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조성

나. 입주 및 사후관리(변경)

(1) 입주 자격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 및 제43조 제6항에 따라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한하여 공장부지안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신설)
- 다)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한국자산관리공사(신설)

(2) 입주대상 업종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종
 - ※ 단, 아스콘, 레미콘, 시멘트 제품제조업, 도정 및 도축업종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과 단지내 입주업체 생산활동 및 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업장은 제외하며,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집단민원, 기타의 사정으로 특정업종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제한할 수 있음.(신설)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업
(단, 공장부지 내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신설)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6811)
(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신설)

(3) 입주우선순위

- 가) 현존 부존자원을 우선 사용하는 업체
- 나)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고 자체자금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다) 고부가가치 업종인 첨단산업 업종
- 라) 기존입주 업체와의 계열, 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 마) 공해가 적고 유후 노동력 이용이 가능한 업종

다. 농공단지 조성시 기대 전망

(1) 생산 및 수출 전망(연간)

계	내 수	수 출
236,500백만원	220,000백만원	16,500백만원

(2) 고용 전망

고용계획 인원	현지 고용인원	외지 고용인원
469명	326명	143명

(3)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연간)

구 분	금 액
임 금 소 득	4,890백만원
원 자 재	1,320백만원
지역주민소득	790백만원

(4)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구 분	계	철강 기계	전기 전자	비금속	운송 장비	기 타	비 고
총 고용인원	469명	358명	15명	18명	38명	40명	
현지 고용인	326명	249명	10명	12명	27명	28명	
외지 고용인	143명	109명	5명	6명	11명	12명	

**라. 인근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1) 인근 입주업체 현황

- 가) 농공단지 : 62개 업체
- 나) 개별입지 : 159개 업체
- 다) 산업단지 : 138개 업체

(2) 경쟁력에 관한 전망 : 인근 입주업체와 업종이 대부분 다름으로 특별한 경쟁관계가 있지 않으며, 제품의 판매 시장이 지역 내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입주업체와의 경쟁력은 무관함

(3) 협력 방안 : 인근 입주업체와 협력관계 있는 업종은 없으나 향후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업종의 업체를 적극유치 협력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마.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획 및 공장배치 계획

(1) 용도별 구획 계획

총 면적	산업용지구역 면적	지원시설구역 면적	공공시설구역 면적	녹지시설 면적
243,752m ²	171,616m ²		32,781m ²	39,355m ²
(100%)	70.4%		13.5%	16.1%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 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신설)

나) 지원시설 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동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중소기업의 종합센터의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 다) 공공시설 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용도분류)에 의한 근린공공시설의 건축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시설의 범위)에 의한 시설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신설)
- 라)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표 # 1

바.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업종별	품목분류	업체수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22	171,616	100	
철강	24	1	9,450	5.5	
기계	29	16	121,605	70.9	
전기	28	1	5,555	3.2	
전자	26				
기타제조업	33	2	14,814	8.6	
비금속소재	23	1	6,330	3.7	
운송장비	31	1	13,862	8.1	

(2) 업종별 배치기준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공장 배치
- 나) 정읍 태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2. 나항의 업종에 한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써 특정 업종의 신청면적이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업종의 배치계획 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 신청 면적이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 기존 입주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고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표 # 2

사.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용계획

시 설 물	위 치	구 조	면적 (㎡)	운용계획
주차장	태인농공단지 내	아스콘 포장	1,368	관리기관 또는 태인농공단지협의회에서 유지관리

아.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관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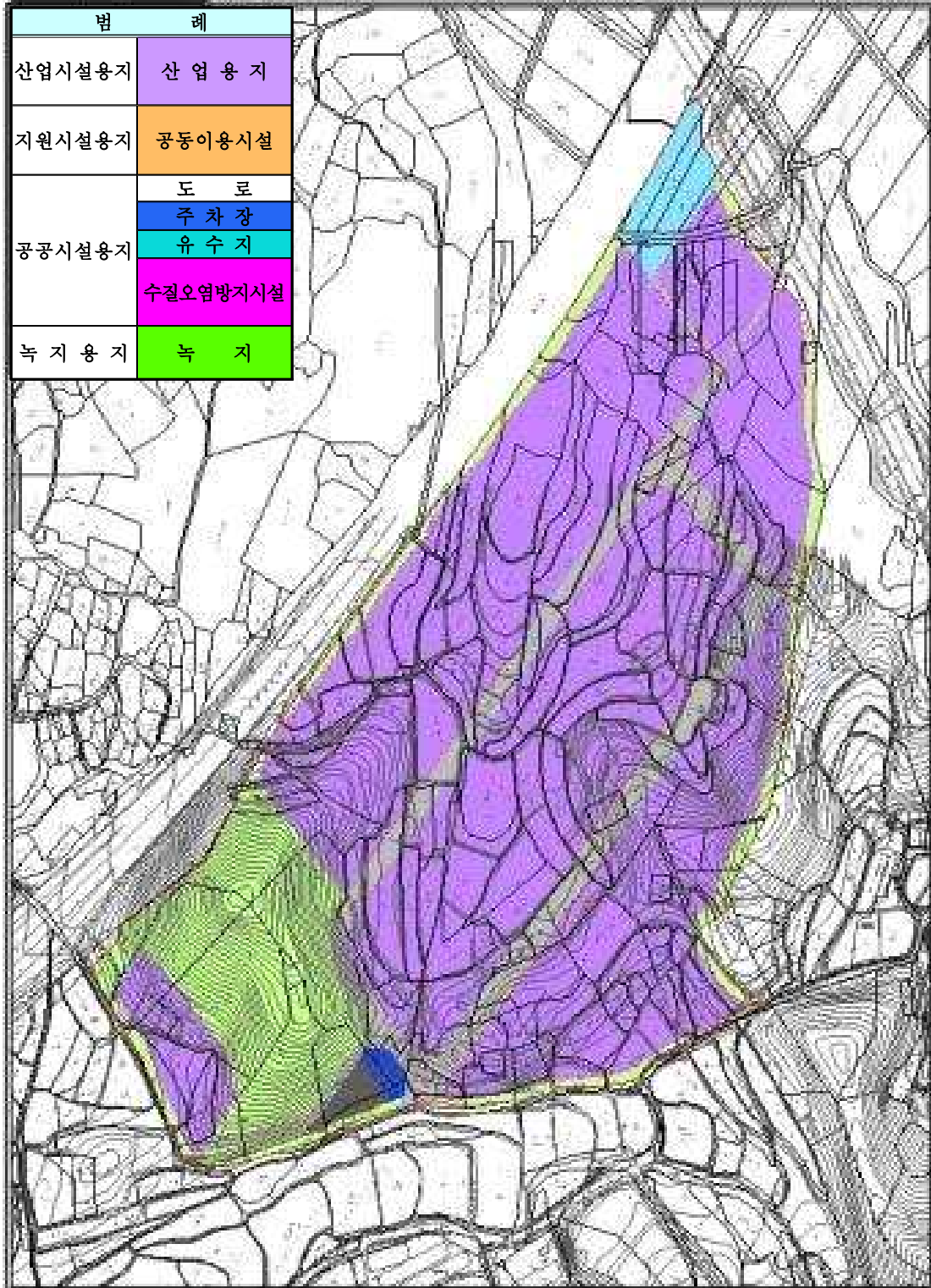
- 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관리 및 공공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 나) 기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항

- 가) 농공단지 지원시설이라 함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반 기능 즉, 공공행정기능, 기업생산활동 지원기능, 종업원 후생복지 기능 등을 말하며 이들 시설을 농공단지 개발방향 및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배치
- 나)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게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산정
- 다)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근로환경에 적합한 후생 복지 시설의 기준 및 위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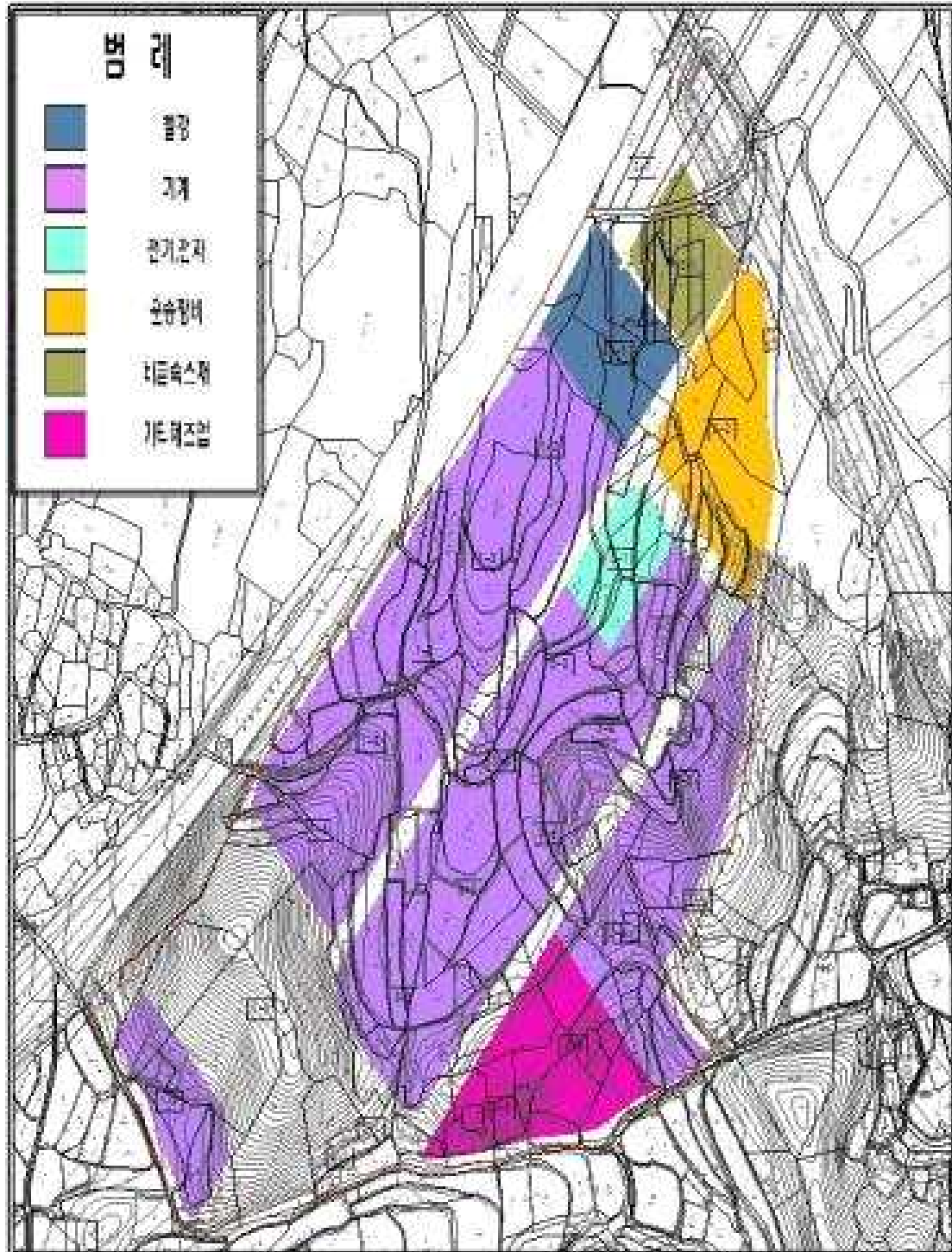
[별표 # 1]

용도별 구획 평면도



[별표 # 2]

업종별 배치 계획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2-4호

정읍 철도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 철도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월 7일

1. 농공단지 개요

가. 위 치 : 전북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956번지 일원

나. 관리기관 : 정읍시(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다. 조성목적

- 철도산업의 초우량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 철도산업 기반구축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유도 등 신성장 철도산업 환경조성
- 국내외 노후전동차 교체수요에 따른 철도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입주업체 수요에 맞는 철도산업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라. 추진경위

- 2015. 10. 07. : 전북도, 정읍시, (주)다원시스와 투자협약체결(MOU)
- 2016. 01. 05. : 철도산업특화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완료
- 2016. 04. 06. : 철도산업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 2017. 01. 23. : 2017년 산업입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국토교통부)
- 2017. 01. 24. : 2017년 신규 농공단지 지정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7. 09. 27. : 2017년 신규 농공단지 수요검증 실시(전라북도)
- 2017. 12. 11. : 전라북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2017. 12. 13. : 2017년 신규농공단지 지정승인(전라북도)
- 2018. 03. 16. :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정읍시 고시 2018-50호)

- 2018. 04. 27. :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8-93호)
- 2019. 12. 20. :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정읍시 고시 제2019-254호)
- 2020. 04. 03. :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0-99호)
- 2021. 01. 29. :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정읍시 고시 제2021-13호)
- 2021. 04. 16. :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정읍시 고시 제2021-34호)
- 2021. 04. 23. :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정정 고시(정읍시 고시 제2021-36호)
- 2021. 07. 30. :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정읍시 고시 제2021-1137호)
- 2022. 1. 7. :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2-4호)

마. 분양계획(변경)

(단위: m²)

구 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221,861	220,885.6	143,128	142,387.7	2016~2021	정읍시
산업시설구역	143,128	142,387.7	143,128	142,387.7		
주거시설구역	1,757	1,767.8	-	-		
지원시설구역	9,617	9,313.1	-	-		
공공시설구역	22,347	22,664.9	-	-		
녹지시설구역	45,012	44,752.1	-	-		

바. 입주계획

구분	입주업체수(개소)			면적(천㎡)			비고
	계	제조업	지원기관	계	제조업	지원기관	
2021. 09. 현재	1	1	-	82,444.0	82,444.0	-	
향후계획	9	9	-	59,943.7	59,943.7	-	
합계	10	10	-	142,387.7	142,387.7	-	

사. 입지여건

시설명	현황	확충계획
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수원: 광역상수도 ○ 1일 소요량 : 781.34㎡/일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력 : 2,397MWh/년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선수 : 115회선 	
폐수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폐수(38.19㎡/일), 생활용수(88.65㎡/일), 지하수량(10.78㎡/일)은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처리 계획 	
공동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 18,473.1㎡ ○ 주차장 : 1,907.5㎡ 	
기타		

2.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변경)

- (1) 적극적인 입주기업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로 생산활동 지원
-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및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 (3)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조성

나. 입주자격 및 순위

(1) 입주자격

- 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 및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한하여 공장부지안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신설)
- 다) (산설시설 구역)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한국자산관리공사(신설)
- 라) (공원 점사용)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협의체

(2) 입주대상 업종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 ※ 단, 아스콘, 레미콘, 시멘트 제품제조업, 도정 및 도축업종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과 단지내 입주업체 생산활동 및 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업장은 제외하며,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집단민원, 기타의 사정으로 특정업종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제한할 수 있음.(신설)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업(신설)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6811)(신설)

(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3) 입주우선순위

가) 주 자동차 생산업체인 (주)다원시스 및 협력업체(철도 부품제작 업체)

나) 자동차 생산 관련 업체

다) 건설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자체자금을 조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라) 기존입주 업체와의 계열, 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마)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수출기여도가 높은 업종

다. 농공단지 조성 시 기대 전망

(1) 생산 및 수출 전망(년간)

계	내 수	수 출
387,400 백만 원	360,300 백만 원	27,100 백만 원

(2) 고용 전망

고용계획 인원	현지 고용인원	외지 고용인원
1,071명	400명	671명

(3)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년간)

구 분	금 액	비 고
임 금 소 득	26,100 백만 원	
원 자 재	2,160 백만 원	
지역주민소득	2,076 백만 원	

(4)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구 분	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기 타
총 고용인원	1,071명	1,071명	
현지 고용인	400명	400명	
외지 고용인	671명	671명	

라.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변경)

(1)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 수요

구 분	업체수	면적(㎡)			필요 인원	현인원	부족 인원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0	143,128	감)740.3	142,387.7	1,071	671	40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	2,217	증)5.3	2,22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 기계 및 가구 제외	1	2,911	감)102.5	2,808.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3	901	증)25.8	926.8				
전기장비 제조업(C28)	1	901	증)25.8	926.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	3,583	증)5.9	3,588.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	4,354	감)79.0	4,275.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1	125,482	감)633.2	124,848.8				
가구 제조업(C32)	1	2,779	증)11.6	2,790.6				

(2)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

구 분	가구수 (가구)	인구수(명)			가구당 인구
		계	남	여	
계	20,713	44,952	22,062	22,886	2.17
입암면	1,674	3,158	1,542	1,612	1.88
소성면	1,208	2,222	1,109	1,113	1.84
내장상동	8,237	21,167	10,238	10,929	2.57
초산동	3,852	10,143	5,030	5,113	2.63
농소동	3,852	4,524	2,219	2,305	2.13
상교동	1,890	3,738	1,924	1,814	1.98

**마. 인근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1) 인근 입주업체 현황

- 가) 농공단지 103개 업체
- 나) 산업단지 140개 업체
- 다) 개별입지 115개 업체

(2) 경쟁력에 관한 전망 : 인근 입주업체와 업종이 대부분 다름으로 특별한 경쟁관계가 있지 않으며, 제품의 판매 시장이 지역 내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입주업체와의 경쟁력은 무관함

(3) 협력 방안 : 인근 입주업체와 협력관계 있는 업종은 없으나 향후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업종의 업체를 적극유치 협력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바.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획 및 공장배치 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계획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비 고
면적 (㎡)	기정	221,861	143,128	1,757	9,617	22,347	45,012	
	변경	220,885.6	142,387.7	1,767.8	9,313.1	22,664.9	44,752.1	
구성비 (%)	기정	100.0	64.5	0.8	4.3	10.1	20.3	
	변경	100.0	64.5	0.8	4.2	10.3	20.2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 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신설)

나) 주거시설 구역

- 정읍시가 철도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종업원 기숙사 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 또는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관리위탁

다)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동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중소기업의 종합센터의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라)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마)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건축물(공원, 녹지 등)

사. 사후관리계획

- (1) 입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과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 (2) 입주기업체의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동차 생산 및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 등 기술개발 및 공장 자동화 설치 촉진유도
- (3)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제한업종 및 폐수발생 업체는 입주를 제한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공장설립시 집진시설 등을 설치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는 가능함
- (4) 환경오염 방지 및 농공단지 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입주기업 협의체로 결정 징수
-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활동 강화

아. 협력강화 방안

- (1) 입주업체에 대한 정기, 수시 용자 혜택 등 운영자금 지원
- (2) 전동차 생산 동일·유사 업종의 집단화로 신기술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공유

자.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1) 배치계획

유치업종 (중분류)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43,128	감)740.3	142,387.7	100.0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217	증)5.3	2,222.3	1.6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911	감)102.5	2,808.5	2.0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01	증)25.8	926.8	0.6	
(C28) 전기장비 제조업	901	증)25.8	926.8	0.6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583	증)5.9	3,588.9	2.5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354	감)79.0	4,275.0	3.0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5,482	감)633.2	124,848.8	87.7	(주)다원시스 등
(C32) 가구 제조업	2,779	증)11.6	2,790.6	12.0	

(2) 업종별 배치기준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공장배치

나)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2의 나항의 업종에 한함

차. 주거시설 설치 및 운용계획

시설물	위치	구조	면적(㎡)	운용계획
종업원 기숙사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내	철근 콘크리트조	1,767.8	관리기관에서 건축물 준공후 입주기업체에 임대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위탁

카. 지원시설 설치 및 운용계획

시설물	위치	구조	면적(㎡)	운용계획
철도시험 선로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내	철도	9,313.1	관리기관에서 철도 연결선로 기반시설 조성후 입주 기업체에 부지 임대

타.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용계획

시설물	위 치	구 조	면 적(㎡)	운용계획
주차장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내	아스콘 포장	1,907.5	관리기관 또는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유지 관리

파.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농공단지 입주업체관리 및 공공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나) 기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항

가) 농공단지 주거시설 및 지원시설이라 함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반기능 즉, 공공행정기능, 기업 생산활동 지원기능, 종업원 후생복지기능 등을 말하며 이들 시설을 농공단지 개발방향 및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배치

나)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게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산정

다)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근로환경에 적합한 후생복지 시설의 기준 및 위치설정

하. 용도별 및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표#1, #2

[별표 # 1]

용도별 구역 평면도



[별표 #2]

업종별 배치 계획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2-5호

정읍 소성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 소성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월 7일

1. 농공단지 개요

가.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나. 관리기관 : 정읍시(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440-1))

다. 조성목적

-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연계한 정읍 소성 특화농공단지 조성
-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농산물을 원자재로 하는 생산시설 유치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제공
-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정읍시의 자립·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

라. 추진경위

- 2012. 03. 15 : 2013년 신규 농공단지 지정승인(농식품부)
- 2013. 11. 25 : 정읍 소성 특화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 및 고시(정읍시 고시 2013-87호)
- 2014. 04. 17 : 정읍 소성 특화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정읍시 고시 2014-39호)
- 2015. 10. 12. : 정읍 소성 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전라도 고시 제2015-215호)
- 2022. 1. 7. : 정읍 소성 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2-5호)

다. 분양현황(변경)

(단위 : m²)

변경 여부	구 분	총면적	분 계 획 면 적	분양면적	미분양 면 적	조성기간
기 정	계	232,000	163,795	-	163,795	
변 경	계	232,000	163,795	55,176.5	106,618.5	
기 정	산업시설구역	163,795	163,795	-	163,795	2012. 3. 15 2016. 12월
변 경	산업시설구역	163,795	163,795	55,176.5	106,618.5	2012. 3. 15 2021. 9월
기 정	지원시설구역	319	-	-	-	
기 정	공공시설구역	35,886	-	-	-	
기 정	녹지시설구역	32,000	-	-	-	

바. 입주현황(변경)

(단위 : 개소, m²)

변경 여부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계	제조업	지원기관	계	제조업	지원기관
	계	25	25	-	163,795	163,795	-
기 정	2015. 09. 현재			-			-
변 경	2021. 09. 현재	14	14	-	52,240	52,240	-
	향후계획	25	25	-	163,795	163,795	-

사. 입지여건

시설명	현 행	확 충 계 획
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수원 : 광역상수도 1일 소요량 : 1,563.9m³/일 	
전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전력 : 76,810MWh/년 	
통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선수 : 72회선 	
환 경	폐수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발생량 산업폐수(795m³), 생활용수(66m³), 지하수량(43.5m³)는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 처리
	공동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로 : 29,096m² 주차장 : 2,153m²
	기타	

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 방향

- (1) 적극적인 입주기업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로 생산 활동 지원
-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및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 (3)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조성

나. 입주 및 사후관리(변경)

(1) 입주 자격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 및 제43조 제6항에 따라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한하여 공장부지안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신설)
- 다)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한국자산관리공사(신설)

(2) 입주대상 업종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종
 - ※ 단, 아스콘, 레미콘, 시멘트 제품제조업, 도정 및 도축업종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과 단지내 입주업체 생산활동 및 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업장은 제외하며,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집단민원, 기타의 사정으로 특정업종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제한할 수 있음.(신설)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업
(단, 공장부지 내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신설)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6811)
(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신설)

(3) 입주우선순위

- 가) 현존 부존자원을 우선 사용하는 업체
- 나)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고 자체자금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다) 고부가가치 업종인 첨단산업 업종
- 라) 기존입주 업체와의 계열, 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 마) 공해가 적고 유후 노동력 이용이 가능한 업종

다. 농공단지 조성 시 기대 전망

(1) 생산 및 수출 전망(연간)

계	내 수	수 출
236,500백만원	220,000백만원	16,500백만원

(2) 고용전망

고용계획 인원	현지 고용인원	외지 고용인원
674 명	637 명	37 명

(3)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연간)

구 분	금 액	비 고
임 금 소 득	15,940 백만원	
원 자 재	1,320 백만원	
지 역 주 민 소 득	790 백만원	

(4)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구 분	계	음·식료품 제조업	기 타
총 고용인원	674 명	674 명	
현지 고용인	637 명	637 명	
외지 고용인	37 명	37 명	

라. 인근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1) 인근 입주업체 현황

- 가) 농공단지 : 73개 업체
- 나) 산업단지 : 138개 업체
- 다) 개별입지 : 159개 업체

(2) 경쟁력에 관한 전망 : 인근 입주업체와 업종이 대부분 다르므로 특별한 경쟁관계가 있지 않으며, 제품의 판매 시장이 지역 내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입주업체와의 경쟁력은 무관함

(3) 협력 방안 : 인근 입주업체와 협력관계가 있는 업종은 없으나 향후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업종의 업체를 적극유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마.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획 및 공장배치 계획(변경)

(1) 용도별 구획 계획

총 면적	산업용지 구역면적	지원시설 구역면적	공공시설 구역면적	녹지시설 면적
232,000㎡	163,795㎡	319㎡	35,886㎡	32,000㎡
100 %	70.6 %	0.1 %	15.5 %	13.8%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신설)

나) 지원시설 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동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중소기업의 종합센터의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다) 공공시설 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용도분류)에 의한 근린공공시설의 건축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시설의 범위)에 의한 시설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신설)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공원, 녹지)

바)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표 # 1

바.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업종별	품목분류 (중분류)	업체수	면적	비고
식료품 제조업	10	25	163,795㎡	2008. 2. 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음료 제조업	11			

(2) 업종별 배치기준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공장 배치

나) 정읍 소성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2. 나항의 업종에 한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써 특정 업종의 신청면적이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업종의 배치계획 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 신청 면적이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 기존 입주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고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표 # 2

사.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용계획

시설물	위 치	구 조	면적(㎡)	운 용 계 획
주차장	정읍 소성 특화 농공단지 내	아스콘 포장	2,153	관리기관 또는 소성 특화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유지 관리

아.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관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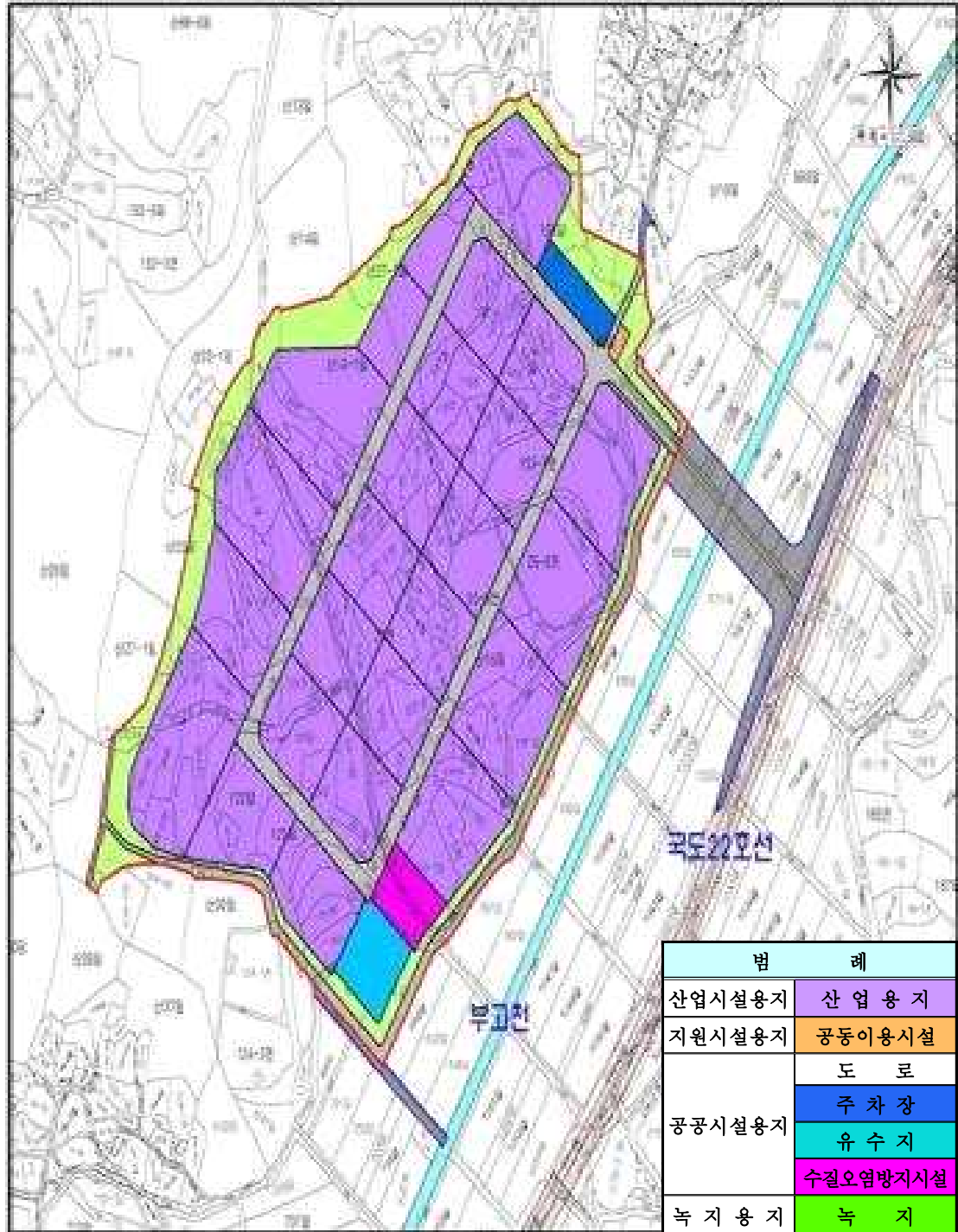
- 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관리 및 공공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 나) 기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항

- 가) 농공단지 지원시설이라 함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반기능
즉, 공공행정기능, 기업 생산 활동 지원기능, 종업원 후생복지 기능 등을
말하며 이들 시설을 농공단지 개발방향 및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배치
- 나)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게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 활동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산정
- 다)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근로환경에 적합한 후생복지
시설의 기준 및 위치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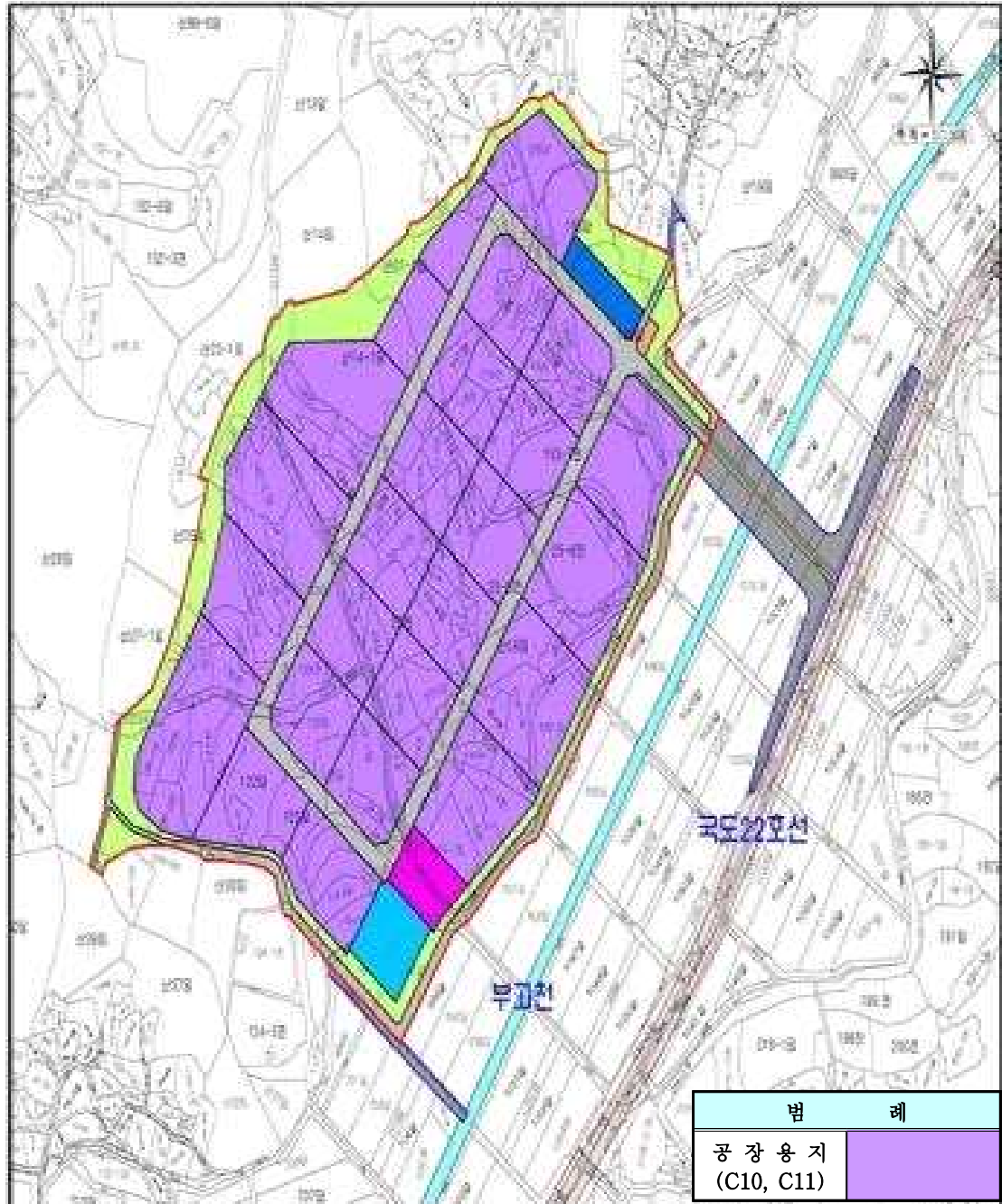
별표 #1

용도별 배치 계획도



별표 #2

업종별 배치 계획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2-7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군산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 도면과 토지조서는 군산시 농지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월 7일

1.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면적

(단위 : ha)

구 분	농업진흥지역			비 고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전라북도	135,877.8	117,465.3	18,412.5	- 진흥 : △0.8	- 보호 :
군 산 시	11,598.2	10,705.7	892.5	- 진흥 : △0.8	- 보호 :

※ 지형도면 : 실음생략

2. 해제 사유

- 군산 도시계획시설(청암산주차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81번지 일원)
-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8,011m² 해제

3. 농업진흥지역 도면(1/5,000) 및 토지조서는 군산시에 보관한다.

4.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한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1-2055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월 7일

1. 법 인 명 : 사단법인 파라칼레오 선교회
2. 소 재 지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15, 2층
3. 대 표 자 : 이현식
4. 설립목적 : 기독교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가지고 회원 및 선교단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선교 및 구제사업을 진행하여 지구촌에 십자가 복음의 건강한 교회 설립, 인도주의 차원의 주거환경개선과 각종 재해복구 및 보건위생 등의 지원, 선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선교사 파송으로 세계복음화와 한국우호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6. 허가번호 : 제2021-75호
7. 허가연월일 : 2021년 12월 31일

전라북도 공고 제2022-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월 7일

■ 공 고 사 항

- 1. 등록번호 : 제2022-01호
 - 2. 모 집 자 : (재)커뮤니티비즈니스
 - 3. 모집목적 : 완주군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 4. 모집목표액 : 금450,000,000원(금사억오천만원)
 - 5. 모집금품 : 현금 및 물품
 - 6. 모집기간 : 2022. 1. 7. ~ 2022. 12. 31.
 - 7. 사용기간 : 2022. 1. 7. ~ 2023. 12. 31.
 - 8. 모집지역 : 전국
 - 9. 모집방법 : 거리모금, 온라인 모금 및 후원모금 등
- * 사무실 소재지 :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

전라북도 공고 제2022-22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인정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전라북도지사

1. 공 고 명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종 목 명			보 유 자			
명 칭	기·예능	관리단체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죽염제조장	죽염제조	부안군 (부안군수)	허재근	남	1928.03.01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로 439
가사	완제	부안군 (부안군수)	김봉기	남	1935.11.20	전북 부안군 학동길 4
석장	석조각	익산시 (익산시장)	김옥수	남	1954.12.05	전북 익산시 금마면 무왕로 1884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종 목 명		보 유 자		
명 칭	기·예능	성 명	성별	예 고 사 유
죽염제조장	죽염제조	허재근	남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 전환 희망
가사	완제	김봉기	남	고령의 나이로 전승활동에 어려움 발생, 보유자가 명예보유자 전환 희망
석장	석조각	김옥수	남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 발생하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 전환 희망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라북도 문화유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63-280-3318
 - 전송번호 : 063-280-2539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끝.

정읍시 공고 제2022-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정읍시 주산~강고선(군도4호)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7.
정 읍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2년 03월 ~ 2024년 12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도로구역) 위치	사업내용 및 면적(급회)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도로사업 / 주산~강고선(군도4호) 도로확포장공사	전북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연장 : 0.6km ○폭원 : 8.0m ○면적 : 8,495㎡	정읍시장/ 정읍시 충정로 234 (수성동 440-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주산~강고선(군도4호)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열람장소, 열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주산~강고선(군도4호) 도로확포장공사	정읍시청 건설과 정읍시 고부면사무소	2022. 01. 7. ~ 2022. 01. 21. (15일간)

※ 사업구간의 위치도 및 관련 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기간 중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01. 07. ~ 2022. 01. 21.(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① 편입토지 총괄표

구분	계		구성비 (%)	국공유지								사유지	
				소계		국토교통부		정읍시		농림축산식품부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합 계	8,495	90	100.0	6,394	48	1,936	2	4,144	40	314	6	2,101	42
전	1,134	10	13.35	940	4			940	4			194	6
답	1,042	9	12.27	824	3			824	3			218	6
임야	74	2	0.87	68	1			68	1			6	1
대지													
도로	6,150	66	72.40	4,467	37	1,936	2	2,302	31	229	4	1,683	29
구거	85	2	1.00	85	2					85	2		
잡	10	1	0.12	10	1			10	1				
묘													
가													

② 편입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부	공부면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면·리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1	고부면 강고리	1350	도	1,624		37		농림수산부		
2	고부면 강고리	1220	도	363		68		농림수산부		
3	고부면 강고리	1221	구	2,415		73		농림수산부		
4	고부면 강고리	1120	도	15,075		1,837		건설부		
5	고부면 강고리	219-13	도	10		10		임승렬 외 1인	정주읍 상리 594	
6	고부면 강고리	219-14	도	40		40		임승렬 외 1인	정주읍 상리 594	
7	고부면 강고리	226-2	도	40		40		김영식	334	
8	고부면 강고리	219-15	도	26		26		임승렬 외 1인	정주읍 상리 594	
9	고부면 강고리	219-16	도	106		106		임승렬 외 1인	정주읍 상리 594	
10	고부면 강고리	225-1	도	10		10		김낙필	527	
11	고부면 강고리	219-17	도	86		86		임승렬 외 1인	정주읍 상리 594	
12	고부면 강고리	223-1	도	66		66		박덕용	347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면·리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13	고부면 강고리	1349	도	139		96		농림수산부		
14	고부면 강고리	227-1	도	83		34		김용철	512	
15	고부면 강고리	226-3	도	93		93		이준로	539	
16	고부면 강고리	226-7	도	197		197		정읍시		
17	고부면 강고리	226-8	도	199		199		정읍시		
18	고부면 강고리	225-3	도	41		41		정읍시		
19	고부면 강고리	223-5	도	46		46		정읍시		
20	고부면 강고리	223-6	도	69		69		정읍시		
21	고부면 강고리	223-7	도	75		75		정읍시		
22	고부면 강고리	1222	도	13,250		28		농림수산부		
23	고부면 강고리	1234	구	334		12		농림수산부		
24	고부면 강고리	536-3	도	88		88		정읍시		
25	고부면 강고리	536-1	도	20		20		정읍시		
26	고부면 강고리	219-18	도	182		182		임승렬 외 1인	정주읍 상리 594	
27	고부면 강고리	219-22	도	199		199		정읍시		
28	고부면 강고리	537-1	도	13		13		이성렬	정주읍 시기리 204	
29	고부면 강고리	537-4	도	25		25		정읍시		
30	고부면 강고리	538-4	도	44		44		정읍시		
31	고부면 강고리	538-1	도	30		30		정읍시		
32	고부면 강고리	219-19	도	56		56		정기석 외 1인	정주읍 수성리 699	
33	고부면 강고리	219-24	답	24		24		이용식	신중리 293	
34	고부면 강고리	546-8	답	28		28		김태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27,112동 601호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35	고부면 강고리	546-2	도	13		13		정읍시		
36	고부면 강고리	545-1	잡	10		10		정읍시		
37	고부면 강고리	545-2	도	50		50		정읍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면·리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38	고부면 강고리	544-1	도	40		40		정읍시		
39	고부면 강고리	543-1	도	99		99		건설교통부		
40	고부면 강고리	546-4	도	99		99		정읍시		
41	고부면 강고리	546-6	답	141		141		정읍시		
42	고부면 강고리	546-3	도	3		3		정읍시		
43	고부면 강고리	542-1	도	50		50		정읍시		
44	고부면 강고리	547-4	도	205		205		김종섭	641	
45	고부면 강고리	547-1	도	63		63		김종섭	641	
46	고부면 강고리	520-2	도	7		7		정읍시		
47	고부면 강고리	519-2	도	30		30		정읍시		
48	고부면 강고리	547-3	도	126		126		김종섭	641	
49	고부면 강고리	547-6	답	674		674		정읍시		
50	고부면 강고리	506-1	도	10		10		정읍시		
51	고부면 강고리	505-1	도	26		26		정읍시		
52	고부면 강고리	504-1	도	30		30		정읍시		
53	고부면 강고리	504-3	도	10		10		김성식	441	
54	고부면 강고리	504-4	전	75		75		정읍시		
55	고부면 강고리	547-5	도	7		7		김종섭	641	
56	고부면 강고리	548-2	도	26		26		정읍시		
57	고부면 강고리	501-1	도	76		76		정읍시		
58	고부면 강고리	501-3	도	7		7		김낙삼	529	
59	고부면 강고리	501-6	전	394		394		정읍시		
60	고부면 강고리	501-4	도	10		10		김낙삼	529	
61	고부면 강고리	557-2	도	17		17		김계환 외 6인	474	
62	고부면 강고리	557-4	도	188		188		김계환 외 6인	474	
63	고부면 강고리	557-7	전	37		37		김일도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499	
64	고부면 강고리	557-8	전	16		16		김일도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499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면·리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65	고부면 강고리	557-5	전	201		201		정읍시		
66	고부면 강고리	501-5	도	13		2		김낙삼	529	
67	고부면 강고리	436-3	도	40		8		김일도	499	
68	고부면 강고리	436-5	임	68		68		정읍시		
69	고부면 강고리	557-3	도	109		109		김계환 외 6인	474	
70	고부면 강고리	436-1	도	73		73		정읍시		
71	고부면 강고리	436-7	임	6		6		김일도	499	
72	고부면 강고리	435-4	전	6		6		김일환	516	
73	고부면 강고리	435-5	전	9		9				
74	고부면 강고리	435-3	전	270		270		정읍시		
75	고부면 강고리	435-1	도	76		76		정읍시		
76	고부면 강고리	558-2	도	53		53		이상환	615	
77	고부면 강고리	558-5	답	70		70		김일도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499	
78	고부면 강고리	558-6	답	82		82		김일도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499	
79	고부면 강고리	558-4	답	9		9		정읍시		
80	고부면 강고리	558-3	도	17		17		이상환	615	
81	고부면 강고리	434-1	도	69		69		변진섭	정주시 시기동 173-10	
82	고부면 강고리	434-3	도	295		295		정읍시		
83	고부면 강고리	434-4	답	3		3		김찬식	528	
84	고부면 강고리	434-5	답	11		11				
85	고부면 강고리	433-4	전	2		2		박수구 외 3인	정읍시 수성동 918-4 제일아파트 102-109	
86	고부면 강고리	433-3	도	105		105		정읍시		
87	고부면 강고리	433-1	도	30		30		박덕용	347	
88	고부면 강고리	562-4	전	124		124		전동수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덕신강길 382	
89	고부면 강고리	562-3	도	25		25		정읍시		
90	고부면 강고리	562-2	도	235		235		정읍시		

남원시 공고 제2022-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46호선)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드래곤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46호선)사업인 『남원 드래곤관광단지 진입도로 (소로1-46호선) 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1월 7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46호선)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 드래곤관광단지 진입도로(소로1-46호선) 개설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28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L=590m, B=11m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관광과)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
5. 사 업 비 : 6,200백만원(도비 1,250백만원, 시비 4,950백만원)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불임참조)
7.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9.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불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면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39,145	19,024.1	-	-	-	-	-	-
1	금성리	673-11	구	300.7	300.7	농림축산 식품부					
2	금성리	673-13	구	8.4	8.4	농림축산 식품부					
3	금성리	675	도	96.7	2.0	농림축산 식품부					
4	금성리	675-1	도	7.1	5.0	농림축산 식품부					
5	금성리	648-20	답	79.5	79.5	선*철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길 1*6				
6	금성리	648-24	답	205.0	205.0	선*철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길 1*6				
7	금성리	648-12	도	2,763.1	372.0	남원시					
8	금성리	648-11	도	1,991.0	1,312.0	남원시					
9	금성리	648-10	도	105.8	98.0	남원시					
10	금성리	648-19	답	75.5	75.5	이*선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3				
11	금성리	648-23	답	427.0	427.0	이*선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3				
12	금성리	648-18	답	16.4	16.4	양*석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6				
13	금성리	648-22	답	235.2	235.2	양*석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6				
14	금성리	648-17	답	13.2	13.2	이*원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4				
15	금성리	648-21	답	165.0	165.0	이*원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4				
16	금성리	672	도	551.9	94.0	농림축산 식품부					
17	금성리	672-3	도	306.8	117.0	농림축산 식품부					
18	금성리	673-12	구	17.8	17.8	농림축산 식품부					
19	금성리	62-2	전	708.0	708.0	김*일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길 1*4-*				
20	금성리	61-1	전	413.0	413.0	배*기	이천시 대*면 사*리 4*5 현**차아파트 6**-1*1				
21	금성리	59-1	전	867.0	867.0	이*재	전라북도 남원시 향*동 2*5 중앙***이즈아파트 2-1**3				
22	금성리	57-1	전	344.0	344.0	박*주	전라북도 남원시 용*로 2*1-*2,10*동 90*호				
23	금성리	36-5	전	473.0	473.0	박*순	대전 서구 *동 2*-*1				
24	금성리	36-1	도	37.0	37.0	남원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5	금성리	36-3	도	89.0	89.0	남원시					
26	금성리	36-4	전	59.0	59.0	박*순	대전 서* 내* 2*-*1				
27	금성리	38-10	전	191.0	191.0	이*성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5				
28	금성리	39-1	전	546.0	546.0	김*기	남원시 화*동 5*4				
29	금성리	40-1	전	437.0	437.0	양*석	남원시 왕*동 1*-*6				
30	금성리	41-2	답	731.0	731.0	서*훈	서울특별시 서*구 잠*로1*길 5*,209호				
31	금성리	41-13	답	260.0	260.0	선*철 선*석 최*규	남원시대산면금*리2*0 남원시대산면금*리2*5 남원시대산면금*리2*2				
32	금성리	41-12	답	10.0	10.0	선*철 선*석 최*규	남원시대산면금*리2*0 남원시대산면금*리2*5 남원시대산면금*리2*2				
33	금성리	41-9	답	79.0	79.0	서*훈	서울특별시 서*구 잠*로*4길 *4,209호				
34	금성리	41-8	답	674.0	674.0	서*훈	서울특별시 서*구 잠*로1*길 *4,209호				
35	금성리	30-6	답	612.0	612.0	선*규	전라북도 남원시 서**길 *1-*1 (왕정동)				
36	금성리	산17-1	임	1,292.0	1,292.0	전주*씨진 사공임영 대군파*중	서울시 중*구 가*봉동 2*5-*4				
37	금성리	산20-10	임	22.0	22.0	이*현	전라북도 남원시 대*면 금*리 2*4				
38	금성리	산20-9	임	271.0	271.0	신**저 주식회사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옥*리 산1*2-1				
39	금성리	산20-8	임	409.0	409.0	이*원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금*리 2*1				
40	금성리	615-45	구	97.0	97.0	농림축산 식품부		온누리 신용협 동조합	남원시봉맞길 105	근저당 권자	
41	금성리	28	전	1,729.0	1,729.0	이*윤	전라북도 남원시 가방뜰길 *7,1**동*04호	함중식	남원시오들 길90,102동 408호	근저당 권자	
42	금성리	산3-14	임	313.0	313.0	양**씨 석*공중중	전라북도 남원시 화*동 **3				
43	금성리	산3-6	도	17,460.0	1,594.0	남원시					
44	금성리	672-2	도	175.9	175.9	농림축산 식품부					
45	금성리	산3-9	임	28.0	28.0	양**씨 석*공중중	전라북도 남원시 화*동 **3				
46	금성리	673-7	구	6.2	6.2	농림축산 식품부					
47	금성리	672-4	도	19.7	19.7	농림축산 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8	금성리	산3-13	임	65.0	65.0	양**씨 석*공중중	전라북도 남원시 *정동 **3				
49	금성리	산3-12	임	101.0	101.0	양**씨 석*공중중	전라북도 남원시 *정동 **3				
50	금성리	673-10	구	335.7	335.7	농림축산 식품부					
51	금성리	672-1	도	222.9	222.9	농림축산 식품부					
52	금성리	615-44	구	15.0	15.0	농림축산 식품부					
53	금성리	63	전	8.0	8.0	김*일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금*길 1**6				
54	금성리	60-2	답	5.0	5.0	전*자	전라북도 남원시 성**길 1*,3동 *06호				
55	금성리	60-1	답	128.0	128.0	전*자	전라북도 남원시 성*단길 1*,3동 *06호				
56	금성리	56-2	전	39.0	39.0	이*수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금*리 2*5				
57	금성리	56-1	전	67.0	67.0	이*수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금*리 2*5				
58	금성리	37-1	전	157.0	157.0	최*욱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금*리 *7				
59	금성리	38-3	도	29.0	29.0	남원시					
60	금성리	38-7	도	54.0	54.0	남원시					
61	금성리	38-4	도	98.0	31.0	남원시					
62	금성리	38-8	도	72.0	14.0	남원시					
63	금성리	38-9	전	6.0	6.0	남원시					
64	금성리	38-5	전	46.0	31.0	남원시					
65	금성리	42-1	전	29.0	29.0	이*만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금*리 **9	대산농 업협동 조합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465	근저당 권자	
66	금성리	41-11	답	11.0	11.0	서*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로1*길 *4,*09호				
67	금성리	41-10	답	23.0	23.0	서*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로1*길 *4,209호				
68	금성리	17-1	답	112.0	112.0	이*성	서울 영등포구 대*동 *07-1 코오롱아파트 10*-1*04				
69	금성리	17-2	답	39.0	39.0	이*성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07-1 코오롱아파트 10*-1*04				
70	금성리	615-46	구	132.0	132.0	농림축산 식품부					
71	금성리	614	도	377.0	84.0	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2	금성리	산20-11	임	321.0	321.0	신**저 주식회사	전라북도 남원시 대신면 옥*리 산1**-1				
73	금성리	28-2	전	594.0	594.0	박*식	서울 종로구 부*동 1*1-* 스카이빌라 디-*02				
74	금성리	산20-7	임	340.0	340.0	신**저 주식회사	전라북도 남원시 대신면 옥*리 산1**-1	우리 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독립문지점)	근저당 권자	

수용되거나 사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 건 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 명세	성 명	주 소	
1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75	전력주		1EA	세종특별 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 세종청사	농림 축산 식품부				
소계			1건								
2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산3-6	전력주		1EA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소계			1건								
3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72-2	전력주		1EA	세종특별 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 세종청사	농림 축산 식품부				
소계			1건								
4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48-23	관정		1EA	남원시 대*면 금*리 2*3	이*선				
소계			1건								
5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48-11	전력주		1EA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소계			1건								
6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48-10	전력주		1EA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소계			1건								
7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72	전력주		1EA	세종특별 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 세종청사	농림 축산 식품부				
			대추나무		4주						
			감나무		1주						
소계			3건								
8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3	관정		1EA	남원시 대산면 금*길 1*4-6	김*일				
소계			1건								
9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73-10	감나무		3주	세종특별 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 세종청사	농림 축산 식품부				
소계			1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 건 명	상 황 및 구조	편입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 명세	성 명	주 소	
10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36-4	전력주		1EA	대전 광역시 서구 *동 2*~*1	박*순				
소계			1건								
11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38-8	전력주		1EA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소계			1건								
12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40-1	묘지		3기	남원시 왕*동 1*~*6	양*석				
		감나무		3주							
소계			2건								
13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41-8	전력주		1EA	서울 특별시 서초구 잠*로 1*길 *4, 209호	서*훈				
		창고	컨테이너 3.0*3.2	9.6㎡							
		감나무		3주							
소계			3건								
14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산20-10	묘지재단	대리석 1.2*1.1*0.7	1EA	남원시 대산면 금*리 2*4	이*현				
소계			1건								
15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28-2	측백나무		3주	서울 종로구 부*동 1*1-1 *카이 빌라 디-202	박*식				
		관목		1주							
소계			2건								
16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산20-8	묘지재단	대리석 1.3*0.9*0.5	1EA	남원시 대산면 금*리 2*1	이*원				
		남골당	대리석 5*6.5	1개소							
		측백나무		16주							
소계			3건								
17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28	전력주		1EA	남원시 가방뜰길 *7, 1*8/*04	이*윤	근저당 권자	온누리 신용협동 조합	남원시 봉맛길 105 (향교동)	남원시 오늘길 90, 102동 408호
		조립식 건물	합석지붕	60.0㎡							
				45.0㎡							
				50.0㎡							
				50.0㎡							
				10.0㎡							
소계				120.0㎡							
소계			2건								

김제시 고시 제2021-15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상생거점단지 예정부지인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김 제 시 장
2022년 1월 7일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내용

가. 제한지역 위치 :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311-2번지 일원

나. 제한지역 면적 : 32,726㎡

다. 제한사유 :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용도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난개발, 부동산 투기 및 보상이익을 개발행위 방지

라. 제한대상 및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화원의 설치 및 수목식재 등 보상목적의 일체행위

마.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 "실음생략"

완주군 공고 제2022-1호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완주군 고시 제2021-76(2021.07.30.)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 증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완 주 군 수
2022년 1월 7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7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사업
 - 명 칭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저장고관리사, 과수극저온환경조절온실)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연구시설 : A=1,721,748.4m²
(대지면적 : A블럭: 352,374.9m², B블럭: 159,774.1m², C블럭: 28,321.2m²)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계	기정	변경	계	기정	변경	
합계	57,199.74	55,507.90	1,691.84	76,876.48	75,184.64	1,691.84	
A블럭	소계	47,957.03	46,265.19	1,691.84	67,664.72	65,972.88	1,691.84
	주1,부1~37	46,265.19	46,265.19	-	65,972.88	65,972.88	-
	부38	1,216.00	-	1,216.00	1,216.00	-	1,216.00
	부39	132.84	-	132.84	132.84	-	132.84
	부40	343.00	-	343.00	343.00	-	343.00
B블럭	소계	8,785.19	8,785.19	-	8,755.76	8,755.76	-
	주1,부1~15	8,785.19	8,785.19	-	8,755.76	8,755.76	-
C블럭	소계	457.52	457.52	-	456.00	456.00	-
	주1	457.52	457.52	-	456.00	456.0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농촌진흥청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21. 05. ~ 2021. 12.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공고 제2022-2호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식량과학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완주군 고시 제2020-173(2020.12.28.)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식량과학원) 밀침단가공연구동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완 주 군 수
2022년 1월 7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9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식량과학원)사업
 - 명 칭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밀침단가공연구동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연구시설 : A=866,568.3㎡ 중 (농생3-1 : 361,325.9㎡, 농생5-1 : 72,332.2㎡)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계	기정	변경	계	기정	변경		
계	33,055.8	32,125.02	930.78	44,115.4	42,597.52	1,517.88		
농생 3-1	주1, 부1~37	29,979.77	32,125.02	-	43,726.78	42,597.52	-	기정
	주2	981.25	930.78	981.25		921.82	596.06	준공
						2층		
계	3,505.12	3,505.12		3,997.32	3,997.32			
농생 5-1	주1, 부1~6	3,505.12	3,505.12		3,997.32	3,997.32		기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농촌진흥청장(국립식량과학원)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20. 12. ~ 2021. 12.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고시 제2022-3호

임실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임실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임실군청 건설과(☎063-640-23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임 실 군 수

2022년 1월 7일

1. 임실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가.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	공공청사	소방서	임실읍 이도리 400-18번지 일원	-	증)8,127	8,127	금 회	

나.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	공공청사 (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청사 신설 - A = 8,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서가 미설치된 임실지역에 소방서 신설을 통해 대국민 소방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금회 군계획시설(공공청사)을 신설하고자 함

2. 임실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공고 제2022-1호

공인 등록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2022년 1월 7일

1. 사용개시일: 2022년 1월 5일
2. 공인 등록 내역

신 규 공 인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관인
<p>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공인 조각></p>		
<p>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분임재무관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공인 조각></p>	공인 인영	
<p>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분임지출원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공인 조각></p>	공인 인영	
<p>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공인 조각></p>	공인 인영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공인 조각></p>	<p style="text-align: center;">공인 인영</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	---